

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심사 보고서

2023년 3월 10일

행정·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3년 2월 24일

나. 발의자: 정정희 의원 외 7명

다. 회부일자: 2023년 2월 27일

라. 상정일자: 제2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
행정·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·의결(2023. 3. 7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정정희 의원)

□ 제안이유

관내 일정 지역을 문화거리로 지정 및 지원하여 그 지역의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강서구 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
나. 문화거리의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관련(안 제3조, 제4조)

다. 강서구 문화거리 위원회의 기능, 구성 및 운영(안 제5조 ~ 제7조)

라.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의 위탁(안 제8조)

마. 문화거리 조성에 필요한 사항 지원(안 제9조)

바.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(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3조 및 제4조제1항
- 나. 협조부서: 문화체육과
- 다. 입법예고(2023. 2. 27. ~ 2023. 3. 6.) 결과: 의견없음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장석현)

가. 제정 취지

- 본 조례안은 「지역문화진흥법」에 따라 관내 일정 지역을 문화거리로 지정하여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강서구 문화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제정안임.

나. 주요 내용

- 안 제1조는 「지역문화진흥법」에서 규정한 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¹⁾에 따른 문화거리의 지정으로 관내 문화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
- 안 제2조는 “문화거리”를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으로 정의함

1) 「지역문화진흥법」3조(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1.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
2.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
3.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
4.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

- 안 제3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문화거리를 지정할 경우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주변의 문화적 시설, 구민의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함
- 안 제4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의 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의 책무를 명시하고 문화시설 설치, 문화예술 행사 및 프로그램, 그 밖에 주변 환경개선 등 반영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
- 안 제5조~7조는 문화의 거리 조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한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거리 위원회」(이하 “위원회”)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- 안 제8조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문화거리 운영을 위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
- 안 제9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문화거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거리 내 공연 및 전시 등 문화예술 행사비, 문화거리 안의 환경개선 및 주민협의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함
- 안 제10조는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 문화거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

다. 종합 의견

- 본 조례안은 관내 문화자원이 밀집되어 있거나 문화활동이 지속적으로 개최되는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조성 및 지원하여 그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보존하고 활발한 문화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정안으로,
- 문화적 가치와 문화적 삶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 되고 있는 시점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사업의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
- 또한,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 향유 프로그램의 정착과 문화 인프라 구축 등 우리구 브랜드 이미지 제고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수정가결

8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

- 문화의 거리 운영을 위한 효율적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「주민 협의회」 관련 규정 삭제

나. 수정내용

- 안 제10조 주민협의회 관련 규정을 삭제한다.
- 안 제11조를 제10조로 변경한다.

□ 「지역문화진흥법」

제3조(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1.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
2.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
3.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
4.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